청렴韓세상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2022년 영인면 종합감사결과

아산시 감사위원회

Ⅰ 감사개요

□ 감사종류: 정기 종합감사

□ 감사대상: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 실시기간: 2022. 6. 27. ~ 7. 1.(5일간)

□ 감사범위: 2019. 7. 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1개반 열린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반장: 열린감사팀장 장경진
- 감사반원: 장동범, 박재원, 김민아, 최혁범

□ 근　　거: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 중점 감사사항

○ 복무·시책·일반행정·복지·산업·민원 등 업무 전반

○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예산집행 실태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건, 원, 명)

합 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 정 (금 액)	주의 (인원)
건수	금 액	인원				
15	3,665,360	9	-	-	5 (3,665,360)	10 (주의7, 훈계2)

개선	권고	통 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계	일반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모범 사례 (인원)		
-	-	2	-	-	-	-	2	-	1

2.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실태

❍ 2022년 영인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 보안, 민원사무 처리,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및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 종합감사 결과 영인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대민행정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일부 직원들이 관련 규정,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총15건(예산·회계, 민원, 복지, 일반행정, 산업·건설·)의 사항이 지적되었다.

3. 수범사례

❑ 제 목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신축하 떡케이크 행사 추진

❍ 추진개요(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어르신, 사각지대,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돌봄의 부재로 인해 지역사회 지지체계 마련 필요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병행으로 추진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추진상황

- 대 상: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37명
- 기 간: 2022. 1. 1.~ 2022. 12. 31. (대상자 해당 생신일)
- 참 여: 복지이장, 복지반장, 부녀회장, 행복키움추진단 단원 등
- 내 용: 대상자 생일에 직접 방문하여 생신축하 떡케이크 지원, 봉사자와 대상자 1:1 매칭 모니터링 실시

❍ 기대효과

-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활동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 사명감 고취
- 독거어르신 생신축하 떡케이크 행사를 통해 대상자가 지역사회의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제　목 : 행복키움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 복지네트워크 구축

❍ 추진개요(현황)

- 행복키움 업무협약 추진으로 지속적 나눔 실천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통한 관내 위기가구 지원 및 협력 강화
-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로 '따뜻한 영인면 만들기' 실현

❍ 금년 추진내용

- 일　　시: 2022. 4. 20.(수)
- 협약업체: 한성피씨건설(주)
- 참여단체 :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
- 내　　용 :

·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약속

☞ 어버이날 행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단 사업 설명

☞ 협약업체에서 후원, 자원봉사 등 추진사업 참여

· 행복키움추진단 취약계층 지원 식품 보관 냉장고 기증식

☞ 2021년 냉동식품 보관을 위한 냉동고 기증

❍ 기대효과

- 관내 소재 기업의 지역복지 실천으로 나눔 문화 확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복지 공백 최소화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기업 간 선순환 확립에 기여

Ⅲ 처분요구(권고 · 통보)사항

1. 지적사항 목록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조치	금 액		
계	15건	계 15 시정 5 주의 10 개선 - 권고 - 통보 -	계 회수3 부과 징수 환급1 추징	3,665 727 - - 2,938 -	(미기재)	
1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환급금 관리 소홀	시정	환급	2,938		
3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81		
4	유연근무제 복무관리 소홀	주의				
5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관리 소홀	주의				
6	경매 목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 부적정	주의				
7	장애인 재판정(촉구) 안내 지연	주의				
8	방역·소독 사업관련 유류수불부 미작성	시정				
9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24		
10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주의				
11	공사원가 산정·검토 업무 소홀	주의				
12	건설공사 경비 정산업무 소홀	시정	회수	622		
13	건설공사 계약 면허 부적정	주의				
14	건설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주의				
15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주의				

2. 현지처분 목록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금액(원)	비고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통장)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2,860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공사금액			도급자 (대표자)	사업기간	예산편성 여부	예산부서 협의 여부	추가경정 예산편성 여부
	합계	도급	관급					
●●●●●● 공사	2,510	2,510	-	비공개	2019.12.9.~ 2019.12.12.	부	부	부
●●●●●공사	2,400	2,400	-	비공개	2019.12.12.~ 2019.12.16.	부	부	부
●●●●●●공사	3,060	3,060	-	비공개	2020.6.26.~ 2020.6.29.	부	부	부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며, 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12. 시설비 및 부대비(401 목) 12-1 시설비(401-01)]에 따르면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며,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영인면 종합감사(2019. 7. 1. ~ 감사일 현재까지) 중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 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9년도 및 2020년도 세출예산 시설비에 편성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재사용할 수 없음에도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발주하였으며,

○ 또한,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출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회계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환급금 관리 소홀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시　정
【재 정 상】환　급(2,937,880원)
【지적내용】

가. 기간제 근로자 보험 환급금 발생 내역

(2022. 6. 30. 현재, 단위: 원)

연 번	환급금 발생월	적 요	환급액	근로자 환급액	비 고
누계			5,876,760	2,937,880	
1	2021.02.	●●●●●●● 환급금	75,750	37,875	
2	2021.02.	●●●●●●● 환급금	760,770	380,385	
3	2021.07.	●●●●●●● 환급금	125,770	62,885	
4	2021.07.	●●●●●●● 환급금(1)	715,730	357,865	
5	2021.07.	●●●●●●●● 환급금(2)	410,540	205,270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6	2020.07	●●●●●●●● 환급금	42,220	21,110	
7	2020.07	●●●●●●● 보험료	2,120,570	1,060,285	
8	2020.07	●●●●●●● 보험료	189,070	94,535	
9	2020.07	●●●●●●●보험료	86,670	43,335	
10	2020.12.	●●●●●●● 연금보험료 (2020년 11월 미고지분)	334,580	167,290	
11	2019.07	●●●●●●보험료	1,015,090	507,045	

※ 이호조 자료 재구성

나. 위법 · 부당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7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공무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당시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퇴직 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당초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할 때에는 입금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고, 당일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신고 당시 산정된 보수월액에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에 대한 보험료 총 5,876,760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과다 납부된 보험료 2,937,880원를 환급 조치하지 아니하고 기관부담금으로 전부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환급한 2,973,880원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영인면
【행 정 상】시　정
【재 정 상】회　수(81,480원)
【지적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 부적정 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근무월	근무일수 지급/실제	지출액	적정액	초과지급액
계				888,910	807,430	81,480
1	비공개	21년2월	15/14	109,520	102,220	7,300
2		20년8월	14/12	101,180	86,730	14,450
3	비공개	21년6월	15/14	121,240	113,160	8,080
4	비공개	21년8월	14/13	102,210	94,910	7,300
5	비공개	21년11월	15/14	121,240	113,150	8,090
6	비공개	20년3월	15/14	120,020	112,010	8,010
7	비공개	20년3월	15/14	108,410	101,180	7,230
8	비공개	19년10월	15/12	105,090	84,070	21,020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제6항에 따라 현업공무원 등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며, 정액분은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결근 등의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외 6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81,480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유연근무제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 유연근무제 운영현황

소속	성명	출퇴근 미등록 내역				
		미등록 건 수	유연근무 신청 내역			
			근무제 시작	근무제 종료	시작시간	종료시간
영인면	비공개	91	2019.07.01.	2019.12.31.	09:30	18:30
	비공개	2	2019.12.26.	2019.12.31.	08:30	17:30
	비공개	39	2020.03.03.	2020.03.13.	08:30	17:30
			2020.03.26.	2021.10.26.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現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유연근무 신청자가 위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과 같이 132회에 걸쳐 복무관리시스템(정맥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유연근무제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연근무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관리 소홀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건)

연도	발급건수	개인정보 동의서 누락	수령인 서명(날인) 누락	비고
계	31	3	16	
2019	6	1	6	시스템상 미교부 1건
2020	7	1	7	
2021	18	1	3	

나. 위법 · 부당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및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며, 처리내역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나 청소년증 사업 지침에 따르면 만14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제출받아 처리하며, 청소년증을 교부 할 시에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처리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증 34건을 신청・접수하여 교부하면서 3건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를 갖추지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발급신청을 접수하였다.

○ 또한 청소년증 교부 시, 16건에 대해서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않고 교부하였으며, 2019년 발급된 1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에서 교부처리하지않았으나 실물카드의 교부 또는 파기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업무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경매 목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 부적정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경매 목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 부적정 현황

(2022.6.30.기준)

발급일	사 유	신청인	발급대상자	지적사항
2020.8.11	경매신청	비공개	비공개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미첨부

나.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본인이나 세대원이 위임이 있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의 법령상 사유가 있을 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또한 「2020년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①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②법원 판경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신청서[1]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1)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강제집행 신청서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집행문 부여없이 가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 강제관리),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경매 목적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요청을 받고 강제집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장애인 재판정(촉구) 안내 지연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장애인 재판정 안내 현황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진단 기한	재판정 안내	재판정 촉구	재판정 촉구 지연일수
1	비공개	비공개	2021.10.17.	2021.7.20.	2021.9.27.	10
2	비공개	비공개	2021.12.23.	2021.9.27.	2021.12.1.	8

나. 위법 · 부당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항에 의하면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애 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판정) 기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 자료 제출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 장애인이 재진단(판정)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서식7)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장애인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받고도 재진단(판정)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촉구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 재판정(촉구) 안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방역·소독 사업관련 유류수불부 미작성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시　정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 방역관련 유류수불부 작성현황

연도	소속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금액(원)	유류수불부 작성여부
2020	영인면	2020. 07. 09.	●●●●●●●●● 구입	3,000,000	x
		2020. 10. 19.	●●●●●●●●● 구입	3,473,510	x

나. 위법 · 부당사항

○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에서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에서 물품출납원은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매년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해서 [2]질병예방과에서 수립하는 방역소독 계획에 따르면 유류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 방역업무의 핵심 재료인 유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 질병예방과-8974(2021. 5. 19.) 「2020년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계획 알림」, 질병예방과-10116(2021. 4. 15.) 「2021년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추진 계획 알림」, 질병예방과-10795(2022. 4. 6.) 「2022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추진계획 알림」

○ 또한 2019년 영인면 종합감사 결과, 방역·소독사업 추진 시 유류수불부 미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상 시정 처분요구하였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하며 유류수불부 작성관련 처분요구가 있었던 2019년까지는 작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유류수불부를 작성·비치하지않는 등 방역·소독 사업 유류수불대장 기록·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소독 사업관련 유류수불부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시　정
【재 정 상】회수(24,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1.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근무일지 작성현황

(단위 : 일, %)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운영일수	448	45	105	45	104	45	104
근무일지 작성일수	202 (45%)	0	27	2	24	45	104

2.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급 현황

일자	당초 편성표상 산불근무자	산불 근무일지 상 근무자	산불근무 급식비 제공대상자	당직근무자 (당직비지급여부)
2020.3.7.(토)	●●●	▲▲▲	▲▲▲	▲▲▲ (○)
2020.3.8.(일)	□□□	▤▤▤	▤▤▤	▤▤▤ (○)
2020.3.14.(토)	———	▭▭▭	▭▭▭	▭▭▭ (○)

나. 위법 · 부당사항

1.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근무일지 작성 소홀

○ 「산림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산불방지 사업 실시,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의거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의3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의하면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산림과에서는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 시달하여 읍・면・동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조 편성하여 산불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인면에서도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 자체 산불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 근무하도록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별도의 근무자 서명부없이 근무일지로 대체하여 비상근무자 복무를 운영하였으나, 위와 같이 산불비상근무 기간

448일 중 절반에 미치지못하는 202일에 대해서만 근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근무일지에서도 근무자 이름 외에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 봄철 산불근무에 대해서는 모든 건에서 확인자 결재가 누락되는 등 산불비상근무 복무관리·근무일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별로도 당직수당을 지급받는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추가로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 당직근무자 3명에 대해서 급량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업무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지급된 급식비 24,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 지역민방위대 편성 대원명부 통보 및 임무고지 현황

구 분	편성인원	명단 송부일 (민방위대장)	임무고지서 통지일 (모든 민방위대원)	비 고
2020	219	미송부	미통지	
2021	212	미송부	미통지	
2022	214	미송부	미통지	

나. 위법 · 부당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 및 「민방위대 편성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는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모든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1월 18일까지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6조 서식)하고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2020 ~ 2022년도에 각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 대원 명부를 1월 10일까지 송부하고, 모든 민방위 대원에게 1월 18일까지 임무고지서를 발송하여 편성사실과 소속, 임무 등을 통지하여하여야 하나 미송부 및 미통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방위 업무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공사원가 산정·검토 업무 소홀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

사업연도	공사명	구분	규정	적용
2019	●●●●●●●●● 공사	노임단가	2019 하	2019 상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1
		간접노무비	12.7	12.6
		기타경비	8.8	7.9
	●●●●●●●●공사	노임단가	2019 하	2019 상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1
		간접노무비	12.7	12.6
		기타경비	8.8	7.9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1
2020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68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68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68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68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 공사	노임단가	2020 하	2020 상
		건설기계대여대금	0.68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공사	노임단가	2020 하	2020 상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X	0.081
202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3	미계상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 X	0.081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건설하도급대금	대상 X	0.081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3	미계상
	●●●●●●공사	노임단가	2021 상	2020 상
		간접노무비	13	8
		기타경비	5.8	5.6
	●●●●●공사	간접노무비	13	8
		기타경비	5.8	5.6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간접노무비	13.8	12.7
		기타경비	8.3	8.8
2022	●●●●●●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0.32	0.4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는 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각종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이하인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제4조(계상기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제7조(사

용기준)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인면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사외 25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노임단가 적용기준 연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을 부적정하게 계상하거나 경비 산정에 부적합한 제비율로 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원가 산정・검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건설공사 경비 정산업무 소홀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시　정
【재 정 상】회수(622,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공사금액			도급자 (대표자)	사업기간	산정금액 (정산액)	회수액	비고
	합계	도급	관급					
●●●●●●●공사	20,907	20,907	-	비공개	2020.03.02.~ 2020.03.18.	- (12,049원)	16,000원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공사	28,268	12,643	15,625	비공개	2020.03.24.~ 2020.04.16.	- (6,614원)	8,000원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공사	29,289	17,767	11,522	비공개	2022.03.30.~ 2022.04.26.	- (448,000원)	598,000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나. 위법 · 부당사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2016.12.19.)] 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제4조(계상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

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같은 기준 [별표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급인이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자료(구매, 대금지급, 전자세금계산서 및 집행사진 등)을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인면에서는 “●●●●●●●●●●공사”, “●●●●●●●공사”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제출된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감액없이 청구된 금액대로 정산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경비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건설공사 계약 면허 부적정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공사금액			도급자 (대표자)	사업기간	계약면허
	합계	도급	관급			
●●●●●●●●공사	24,504	18,502	6,002	비공개	2021.03.29.~ 2021.04.08.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공사	17,750	17,750	-	비공개	2021.05.14.~ 2021.06.10.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나. 위법 · 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등)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별표1]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인면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으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가진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야 함에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야 함에도 공사내용에 맞지 않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면허 업체와 계약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건설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공사금액			도급자 (대표자)	사업기간	공사업종
	합계	도급	관급			
●●●●●●●●공사	14,959	14,959	-	비공개	2021.5.14.~ 2021.6.10.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공사	17,750	17,750	-	비공개	2021.5.14.~ 2021.6.10.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분할계약

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인면에서는 **"●●●●●●●●●●●●●●●공사"**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하여 공사 시행하였으며, 동일구조물 공사임에도 1인 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 이하로 옥탑 보수공사와 지붕 보수공사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기 관 명】영인면장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공사금액			도급자 (대표자)	사업기간	공사업종 (현장대리인)
	합계	도급	관급			
●●●●●●●●공사	15,479	15,479	-	비공개	2021.04.05.~ 2021.04.20.	실내건축공사업 (토목초급)

나. 위법·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항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3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 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하며,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성,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인면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현장관리 하도록 하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 1

현 지 처 분 요 구 서

2022년 영인면 종합감사시(2022. 6. 27.~ 7. 1.)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2022. 8. .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 (인)

대상기관	시행년도	처분요구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영인면	2022	시정	납입	2,860	

[제 목] 법인카드 계좌관리 소홀

가. 현 황

○ 법인카드 결제 전용통장 현황

(2022.5.31.기준)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신용카드 통장	잔 액	2,584,669	2022.5.31.기준 2,860원 차액발생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예정 금액	2,583,000	
차액 발생사유	2018년 상반기 이자	2,860	

○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연 현황

연 도	계	2019	2020	2021	2022
결제 지연	53	5	35	3	10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 ②신용카드 사용한 후 지출 결정(원인행위), ③신용카드 결제일에 도래하여 지급결정 및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 입금(지출) 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카드사용 후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출예산 과목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해당계좌로 지출하여 결제일에 출금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결제일 까지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하여 통장잔액이 지급될 금액과 일치하도록 신용카드 통장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법인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매출전표 등 지출예정금액을 상호 확인하여 통장잔액이 지급될 금액과 일치하도록 신용카드 통장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나, 2018년 발생한 예금이자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하였으며, 별첨과 같이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3건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신용카드 결제일보다 최소 1일 최대 21일까지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요구 내용

영인면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인카드 계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예금이자를 세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